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제10조 (계약기간)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수급자'와 '센터'가 각 1부씩 보관하되 계약기간을 명시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은 양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등급(이하 '등급')의 변동이나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아래와 같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및 비급여 대상, 대상별 비용, 계약의 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등
3. '센터'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혹은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시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합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이용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 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자료 참조)

① 방문 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년 1.1 기준)

분류	방문당 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1(9%)	경감2(6%)	기초수급자
가1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면제
가2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가3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7	
가4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가5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가6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1	
가7	210분 이상	64,530	9,680	5,808	3,872	
가8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5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② 방문목욕

(2026년 1.1 기준)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1(9%)	경감2(6%)	기초수급자
차량 이용 (차량 내)	88,990	13,349	8,009	5,339	면제
차량 이용 (가정 내)	80,230	12,035	7,221	4,814	
차량 미이용	50,100	7,515	4,509	3,006	

③ 방문간호

(2026년 1.1 기준)

방문당 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1(9%)	경감2(6%)	기초수급자
15분~30분 미만	42,880	6,432	3,859	2,573	면제
30분~60분 미만	53,770	8,066	4,839	3,226	
60분 이상	62,930	9,440	5,664	3,776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 1.1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 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
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 본인부담금

1) 일반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경감1 (의료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3) 경감2 (의료보험료 순위 0%~25% 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4) 기초수급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3. 기타비용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1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원 인수인('보호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책임 이행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무리한 안마 요구, 계단 청소 등), 할인 및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신원 인수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이용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심한 문제행동을 하거나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이용자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고의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초래할 경우

6) 계약당사자 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2. 제 15조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3.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하는 경우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